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윤재옥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729

발의연월일: 2020. 12. 18.

발 의 자:윤재옥·류성걸·김상훈

정진석 · 김승수 · 윤두현

이종배 • 추경호 • 양금희

윤창현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상 전상군경, 공상군경, 4·19혁명부상자, 공상공무원 및 특별 공로상이자 외의 국가유공자, 그 배우자 및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선 순위자 1명은 「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」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에 서 진료하도록 하며, 국가보훈처장은 전상군경, 공상군경 등의 신체적 기능 회복을 위한 의학적 재활사업을 수행하도록 규정함.

그런데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보훈병원이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지정됨에 따라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한 진료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민간 의료기관에서의 진료에 대한 근거가 없어 진료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고, 국가유공자 등은 신체적 기능 훼손에 따른 정신적 외상이 동반될 수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심리재활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1호의 재난이 발생하여

「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」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에서의 진료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보훈병원 외의의료기관에 진료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, 국가유공자 및그 유가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심리상담 등 심리재활서비스에 관한 사업 수행의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의료지원 및 예우를 충실히 하려는 것임(안 제42조의2 및 제44조의2신설).

법률 제 호
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2조의2(재난상황에서의 진료) 국가는 제42조제5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1호의 재난이 발생하여「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」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에서의 진료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보훈병원 외의 의료기관에 제42조제5항에 따른 진료를 위탁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진료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며,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.

제4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44조의2(심리적 재활 등) ① 국가보훈처장은 국가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하여 심리상담 등 심리 재활서비스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, 그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·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제42조의2(재난상황에서의 진료)
	국가는 제42조제5항 전단에도
	불구하고 「재난 및 안전관리
	기본법」 제3조제1호의 재난이
	발생하여 「한국보훈복지의료
	공단법」 제7조에 따른 보훈병
	원에서의 진료에 중대한 차질
	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
	있는 경우에는 보훈병원 외의
	의료기관에 제42조제5항에 따
	른 진료를 위탁할 수 있다. 이
	경우 그 진료 비용은 대통령령
	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
	며,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가
	부담한다.
<u><신 설></u>	제44조의2(심리적 재활 등) ① 국
	가보훈처장은 국가유공자, 그
	유족 또는 가족의 심리적 안정
	과 사회 적응을 위하여 심리상
	담 등 심리재활서비스에 관한
	시책을 마련하고, 그 사업을 수
	행하여야 한다.
	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·

<u>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</u> 령령으로 정한다.